

## [재]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

화성시 문화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.

2022. 11. 24.

[재]화성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### 1. 모집분야

공모직위	모집인원	임용계약	직무
대표이사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재단업무 통할 및 소속직원 지휘·감독 등

### 2. 응시자격

가. 자격요건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공모직위	자격요건
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사람</li><li>공무원 5급으로 5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사람</li><li>화성시문화재단에서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</li><li>상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사람</li><li>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</li><li>저명한 문화예술인으로써 예술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</li><li>그 밖에 임명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</li></ul>

## 나. 결격사유

### - 「(재)화성시문화재단 정관」 제17조의3(임원의 결격사유)

제17조의3(임원의 결격사유)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3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4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6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-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 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###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마. 삭제

바. 삭제

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 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다. 직무수행 요건

임용직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표이사	담당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령·정관상의 담당직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사장을 보좌하며,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</li> </ul> </li> <li>○ 대내·외적 관계 관련 업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단 업무총괄 및 노사협력관계 구축</li> <li>- 중앙부처, 화성시, 화성시의회, 기타 유관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 관계 구축</li> </ul> </li> <li>○ 재단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</li> <li>-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활동과 보급 및 교육</li> <li>-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자료의 수집·관리·보급·조사·연구</li> <li>- 문화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</li> <li>- 문화복지 증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 위탁하는 사업</li> </ul> </li> <li>○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사회 운영</li> <li>- 조직역량 제고</li> <li>-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</li> <li>- 직원 복리후생 관리</li> <li>- 사건·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직무수행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행 능력요건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50 1321 1401 1915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연번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필요한 주요 능력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요구되는 능력 수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개혁성</td><td>크게 요구</td></tr> <tr><td>2</td><td>리더십</td><td>크게 요구</td></tr> <tr><td>3</td><td>기업가적 능력</td><td>상당히 요구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전문성</td><td>크게 요구</td></tr> <tr><td>5</td><td>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</td><td>크게 요구</td></tr> <tr><td>6</td><td>비전 제시 능력</td><td>크게 요구</td></tr> <tr><td>7</td><td>의사전달 및 협상능력</td><td>상당히 요구</td></tr> <tr><td>8</td><td>청렴도</td><td>크게 요구</td></tr> <tr><td>9</td><td>도덕성</td><td>크게 요구</td></tr> <tr><td>10</td><td>준법성</td><td>상당히 요구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○ 학력 및 전공분야 : 제한없음</li> </ul>	연번	필요한 주요 능력	요구되는 능력 수준	1	개혁성	크게 요구	2	리더십	크게 요구	3	기업가적 능력	상당히 요구	4	전문성	크게 요구	5	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	크게 요구	6	비전 제시 능력	크게 요구	7	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상당히 요구	8	청렴도	크게 요구	9	도덕성	크게 요구	10	준법성
연번	필요한 주요 능력	요구되는 능력 수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개혁성	크게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리더십	크게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기업가적 능력	상당히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전문성	크게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	크게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비전 제시 능력	크게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상당히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청렴도	크게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도덕성	크게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준법성	상당히 요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 3. 전형방법

절차	내용					
서류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사내용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자질 및 능력 등에 관한 사항 심사</li> <li>· 심사기준</li> </ul>					
	구분	20점	20점	20점	20점	20점
	내용	기업경영 능력	인성평가	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	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	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합격기준: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자</li> </ul>						
면접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사대상: 서류심사 합격자</li> <li>· 심사기준</li> </ul>					
	구분	20점	20점	20점	20점	20점
	내용	전문성	리더십	경영혁신	노사 및 직원 친화력	윤리관 및 건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합격기준: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합격처리 및 임원후보자 추천</li> </ul>						
최종합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이사회 심의·의결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</li> </ul>					

### 4. 전형일정

일정	절차	내용
2022. 12. 05 ~ 2022. 12. 09.	접수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접수 처: (우)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함문화센터 3층 총무팀</li> <li>·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문접수: 평일 09:00~18:00까지 접수[점심시간(12:00~13:00), 토요일 및, 공휴일 접수 불가]</li> <li>- 등기우편: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</li> <li>- 응시서류 겹봉에 '대표이사 응모서류 재중' 명기</li> </ul> </li> </ul>
2022. 12. 15. ~ 2022. 12. 16.	서류심사 합격자 공고	·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
2022. 12. 20. ~ 2022. 12. 21.	면접심사	·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시행
2022. 12. 30.	최종합격자 공고	·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안내
2023. 01. 11.	임용	· 임용일정 개별 통보

※ 상기 내용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

## 5.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부수	내용	비고
1	지원서	1부	·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	별첨 서식
2	자기소개서	1부	· 자유기술로 A4용지 3매 이내 작성	별첨 서식
3	직무수행계획서	1부	· 자유기술로 A4용지 3매 이내 작성 · 업무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기술	별첨 서식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1부	· 별첨 양식에 의거 반드시 서명 날인 후 제출	별첨 서식
5	최종학력증명서	1부	· 응시자격 중 학위 취득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증명서 제출	-
6	경력증명서	각 1부	· 증명서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, 근무기간, 직위(직급),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·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제출	-
7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1부	·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'보험가입 전체기간'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	-
8	관련 자격증 사본	각 1부	·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	-
9	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	각 1부	·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	-

※ 응시자격 증빙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 미비, 누락,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

## 6. 보 수: 재단 「보수규정」에 따름

## 7. 유의사항

- 가. 지원서, 직무수행계획서, 자기소개서는 재단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접수 가능하며, 제출 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될 수 있음
- 나.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
- 다. 지원서류 제출 마감 이후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,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기재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
- 라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
  - 1)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될 경우
  - 2)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  - 3)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
- 마.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은 취소됨
- 바. 전형절차 또는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
- 사.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따름
- 아.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함
- 자. 기타 문의사항: (재)화성시문화재단 총무팀(☎ 031-8015-8125)